

(과목코드 : 133)

성명 :

- 형사소송법(7급) 7 - 1

5.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ㄷ.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하여야 한다.
 ㄹ.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6.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이나 특허권·상표권 등과 같이 범죄로 인한 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도 그 권리의 이전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한 고소권은 저작권 등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준용된다.
 ③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인의 처분에 맡길 수 없고, 고소의 취소와는 달리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고소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필요적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친고죄의 고소에 준하여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인정된다.

7.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②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므로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자에게 성명·주거·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사인이 체포한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도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8.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의무적 고려사항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에는 해당한다.

9. 甲과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ㄴ.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ㄷ. 甲은 소송절차의 분리 없이도 당해 소송절차에서 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ㄹ. 甲과 乙의 자백 이외에는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증거가 달리 없는 경우 甲의 자백은 乙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③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乙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공원에서 체포한 후 피의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범행 증거물인 통장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 ④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나 피의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② 보증금 등의 몰취결정은 보석의 취소결정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 ③ 몰수대상물건은 위법하게 압수된 경우라도 몰수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13.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압수한 압수물은 수사기관이 보관한다.
- ② 검사는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것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수사방법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번복한 진술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와 번복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14.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 ②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③ 교사범이나 중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여죄사실로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5.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6.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법관의 서명이 있다면 비록 법관의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사건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실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④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19.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치사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단순한 양형사유인 정상에 관한 사실은 판결이유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나, 법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 ④ 범행당시에 음주만취되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0.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상습폭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상습성을 부인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다투는 경우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③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때에도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4.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에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에는 구속기간 중에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
- ㄷ.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법원판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403조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ㅁ.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석방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① ㄱ, ㄹ
- ② ㄱ,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25. 항소심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② 검사만이 제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 ③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④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